

**제2581호**  
2018. 05.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고 시

제2018-61호 :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  
 제2018-62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17  
 제2018-63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20  
 제2018-6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3  
 제2018-65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24  
 제2018-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25

● 공 고

제2018-38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26  
 제2018-408호 :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 3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1호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 3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7호(2007.5.25.)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1호(2010.3.18.)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53호(2017.07.12)로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 고시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2. 위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의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3396-5725)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58,334	증) 105.3	58,439.3	

다. 주요 변경 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334	증) 105.3	58,439.3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합 계	13,377	감) 31.7	13,345.3	22.84	
	어린이공원	3,128	감) 154	2,974	5.09	
	소공원(1)	356	감) 66	290	0.50	
	소공원(2)	237	증) 76.3	313.3	0.54	
	도로	7,864	증) 128	7,992	13.68	
	학교시설	469	증) 1	470	0.80	
	공공청사 (주민센터)	1,323	감) 17	1,306	2.23	
택 지 (획 지)	소 계	44,957	증) 137	45,094	77.16	
	택지 (1-1)	16,884	증) 208	17,092	29.25	
	택지 (1-2)	20,022	증) 165	20,187	34.54	
	택지 (1-3)	8,051	감) 236	7,815	13.37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8,334	증) 105.3	58,334	1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58,334	증) 105.3	58,334	100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 1) 도로 (변경없음)
- 2) 공원·녹지 등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신당동 333-191번지 일대	3,128	감) 154	2,974	서울시고시 제2010-91호 (2010.03.18)	
	공원	소공원(1)	중구 신당동 330-342번지 일대	356	감) 66	290	서울시고시 제2010-91호 (2010.03.18)	
	공원	소공원(2)	중구 신당동 330-258번지 일대	237	증) 76.3	313.3	서울시고시 제2010-91호 (2010.03.18)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학교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구초교	초등학교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0-2번지	21,025	증) 1	21,026	-	대지 정형화에 따른 토지교환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공청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주민센터	중구 신당동 333-179번지 일대	1,323	감) 17	1,306	서울시고시 제2010-91호 (2010.03.18)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 거 주	
계		58,439.3 (증105.3)		46,400 (증120)		411	-	-	411	-	
기정	신당 제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58,334	택지1-1	16,884	신당동 321번지 일대	411	-	-	411	-	
			택지1-2	20,022	신당동 313-70번지 일대						
			택지1-3	8,047	신당동 333-185번지 일대						
			공공청사 (주민센터)	1,323	신당동 333-179번지 일대						
변경	신당 제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58,439.3 (증105.3)	택지1-1	17,092 (증137)	신당동 321번지 일대	411	-	-	411	-	
			택지1-2	20,187 (증165)	신당동 313-70번지 일대						
			택지1-3	7,815 (감236)	신당동 333-185번지 일대						
			공공청사 (주민센터)	1,306 (감17)	신당동 333-179번지 일대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당 제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58,334	택지1-1	16,884	신당동 321번지 일대	공동주택	60% 이하	248.87% 이하	90m이하																					
			택지1-2	20,022	신당동 313-70번지일대																									
			택지1-3	8,051	신당동 333-185번지일대																									
			공공청사 (주민센터)	1,323	신당동 333-179번지일대	주민센터	60% 이하	200% 이하	건축법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1,240세대 (임대주택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를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세대 수</th> <th>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1,240</td> <td>100.0</td> <td></td> </tr> <tr> <td>전용60㎡이하</td> <td>725</td> <td>58.4</td> <td>임대186세대 포함</td> </tr> <tr> <td>전용60㎡초과~85㎡이하</td> <td>482</td> <td>38.9</td> <td></td> </tr> <tr> <td>전용85㎡초과</td> <td>33</td> <td>2.7</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세대 수	비율(%)	비고	합계	1,240	100.0		전용60㎡이하	725	58.4	임대186세대 포함	전용60㎡초과~85㎡이하	482	38.9		전용85㎡초과	33	2.7
구분	세대 수	비율(%)	비고																											
합계	1,240	100.0																												
전용60㎡이하	725	58.4	임대186세대 포함																											
전용60㎡초과~85㎡이하	482	38.9																												
전용85㎡초과	33	2.7																												
주택의 건설면적 비율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전체세대수의 97.3%																													
심의완화 사항	■ 기부채납비율 완화(20%→17%) - 관련근거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2007.4.25) ■ 허용용적률 상향값(β) 8% 적용(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관련근거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건축물의 건축서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변경	신당 제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58,439.3 (증105.3)	택지1-1	17,092 (증208)	신당동 321번지 일대	공동주택	60% 이하	247.93% 이하	90m이하																					
			택지1-2	20,187 (증165)	신당동 313-70번지일대																									
			택지1-3	7,815 (감236)	신당동 333-185번지일대																									
			공공청사 (주민센터)	1,306 (감17)	신당동 333-179번지일대	주민센터	60% 이하	200% 이하	건축법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1,215세대 (임대주택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를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세대 수</th> <th>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1,215</td> <td>100.0</td> <td></td> </tr> <tr> <td>전용60㎡이하</td> <td>696</td> <td>57.3</td> <td>임대183세대 포함</td> </tr> <tr> <td>전용60㎡초과~85㎡이하</td> <td>451</td> <td>37.1</td> <td></td> </tr> <tr> <td>전용85㎡초과</td> <td>68</td> <td>5.6</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세대 수	비율(%)	비고	합계	1,215	100.0		전용60㎡이하	696	57.3	임대183세대 포함	전용60㎡초과~85㎡이하	451	37.1		전용85㎡초과	68	5.6
구분	세대 수	비율(%)	비고																											
합계	1,215	100.0																												
전용60㎡이하	696	57.3	임대183세대 포함																											
전용60㎡초과~85㎡이하	451	37.1																												
전용85㎡초과	68	5.6																												
주택의 건설면적 비율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전체세대수의 94.4%																													
심의완화 사항	■ 기부채납비율 완화(20%→17%) - 관련근거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2007.4.25) ■ 허용용적률 상향값(β) 8% 적용(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관련근거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건축물의 건축서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변경

3) 공공시설(공공청사) 조성계획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기부채납 시설용도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 대지면적 : 1,323.0㎡ - 건축연면적 : 2,235.0㎡
	건축비	2,352,000원/㎡	- 서울특별시, 2015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동청사(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	5,256,720,000원	- 설치비용 : 설치비용 기준(건축비) × 건축연면적
	부지가액	5,196,000원/㎡	- 개별공시지가 : 2,598,000원/㎡ (2017년 1월 기준, 주변필지 평균) - 부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2배
	환산 부지면적	1,011.69㎡	-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제공면적	2,334.69㎡	- 총 기부채납 면적 : 대지면적 + 환산부지면적
변경	기부채납 시설용도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 대지면적 : 1,306.0㎡ (감 17.0㎡) - 건축연면적 : 2,235.0㎡
	건축비	2,352,000원/㎡	- 서울특별시, 2015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동청사(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	5,256,720,000원	- 설치비용 : 설치비용 기준(건축비) × 건축연면적
	부지가액	5,196,000원/㎡	- 개별공시지가 : 2,598,000원/㎡ (2017년 1월 기준, 주변필지 평균) - 부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2배
	환산 부지면적	1,011.69㎡	-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제공면적	2,317.69㎡ (감 17.0㎡)	- 총 기부채납 면적 : 대지면적 + 환산부지면적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면적 변경

4)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변경)

구분	내용	비고	
산출근거	-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계획용적률 : 210 % - 정비계획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α(순부담율)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100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β :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한 용적률 상향 값 ※ 학교시설면적은 구역의 획지와 대토한 면적으로 면적산정에서 제외		
기정	구역면적(㎡)	58,334 (A)	
	택지(공동주택)면적(㎡)	44,957 (B)	
	학교	469 (C)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소 계	12,908 (C)
		공원/녹지	3,721
		공공청사(동사무소)	1,323
	도로	7,864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4,466 (D)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4,557 (E)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3,885 (F)=(C)-(D)-(E)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1,011.69 (G)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44,957 (H)=(A)-(B)-(C)		
순부담율(α)	10.89 % [(F)+(G)]/(H)X100		
심의기준 상향값 (β)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8.0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210% + 8%) × (1 + 1.3 × 10.89%) = 248.87%		
변경	구역면적(㎡)	58,439.3 (A)	
	택지(공동주택)면적(㎡)	45,094 (B)	
	학교	470 (C)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소 계	12,875.3 (C)
		공원/녹지	3,577.3
		공공청사(동사무소)	1,306
	도로	7,992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4,567.3 (D)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4,557 (E)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3,751 (F)=(C)-(D)-(E)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1,011.69 (G)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45,094 (H)=(A)-(B)-(C)		
순부담율(α)	10.56 % [(F)+(G)]/(H)X100		
심의기준 상향값 (β)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8.0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210% + 8%) × (1 + 1.3 × 10.56%) = 247.93%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 1) 정비구역의 주택밀실 현황 (변경없음)
-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변경)

구 분		계	분양	임대주택	비 고	
기정	합 계	1,240	1,054	186		
	60㎡ 이하	소계	725	539	186	
		30㎡이하	-	-	-	
		30㎡초과 ~ 50㎡이하	216	45	171	
		50㎡초과 ~ 60㎡이하	509	494	15	
		60㎡초과 ~ 85㎡이하	482	482	-	
	85㎡ 초과	소계	33	33	-	
		85㎡초과 ~ 135㎡이하	33	33	-	
		135㎡초과	-	-	-	
		135㎡초과	-	-	-	
변경	합 계	1,215 (감 25)	1,032 (감 22)	183 (감 3)		
	60㎡ 이하	소계	696 (감 29)	513 (감 26)	183 (감 3)	
		30㎡이하	-	-	-	
		30㎡초과 ~ 50㎡이하	269 (증 53)	99 (증 54)	170 (감 1)	
		50㎡초과 ~ 60㎡이하	427 (감 82)	414 (감 80)	13 (감 2)	
		60㎡초과 ~ 85㎡이하	451 (감 31)	451 (감 31)	-	
	85㎡ 초과	소계	68 (증 35)	68 (증 35)	-	
		85㎡초과 ~ 135㎡이하	68 (증 35)	68 (증 35)	-	
		135㎡초과	-	-	-	
		135㎡초과	-	-	-	

※ 변경사유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세대수 변경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택 지	택지(1-1)	16,884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16,884	
		택지(1-2)	20,022	서울시 중구 신당동 313-70번지 일대	20,022	
		택지(1-3)	8,051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185번지 일대	8,051	
	정비 기반 시설	어린이공원	3,128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191번지 일대	3,128	
		소공원(1)	356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0-342번지 일대	356	
		소공원(2)	237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0-258번지 일대	237	
		도 로	7,864	-	7,864	
학 교	469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2-18번지 일대	469			
공공청사 (주민센터)	1,323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179번지 일대	1,323			
기정	택 지	택지(1-1)	17,092 (증 208)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17,092 (증 208)	
		택지(1-2)	20,187 (증 165)	서울시 중구 신당동 313-70번지 일대	20,187 (증 165)	
		택지(1-3)	7,815 (감 236)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185번지 일대	7,815 (감 236)	
	정비 기반 시설	어린이공원	2,974 (감 154)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191번지 일대	2,974 (감 154)	
		소공원(1)	290 (감 66)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0-342번지 일대	290 (감 66)	
		소공원(2)	313.3 (증 76.3)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0-258번지 일대	313.3 (증 76.3)	
		도 로	7,992 (증 128)	-	7,992 (증 128)	
학 교	470 (증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2-18번지 일대	470 (증 1)			
공공청사 (주민센터)	1,306 (감 17)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179번지 일대	1,306 (감 17)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면적 변경

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연면적)
					전용면적(㎡)	세대수	
기정	서울시 중구 신당동 313-70번지 일대	택지 1-2에 포함	2	186	39.96㎡	93세대	전체세대수의 15.00% (16,884.17)
					46.95㎡	78세대	
					51.99㎡	15세대	
변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 313-70번지 일대	택지 1-2에 포함	2	183	30㎡초과 ~ 40㎡미만	90세대	전체세대수의 15.00% (17,913.26)
					40㎡초과 ~ 50㎡미만	80세대	
					50㎡초과	13세대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하.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3.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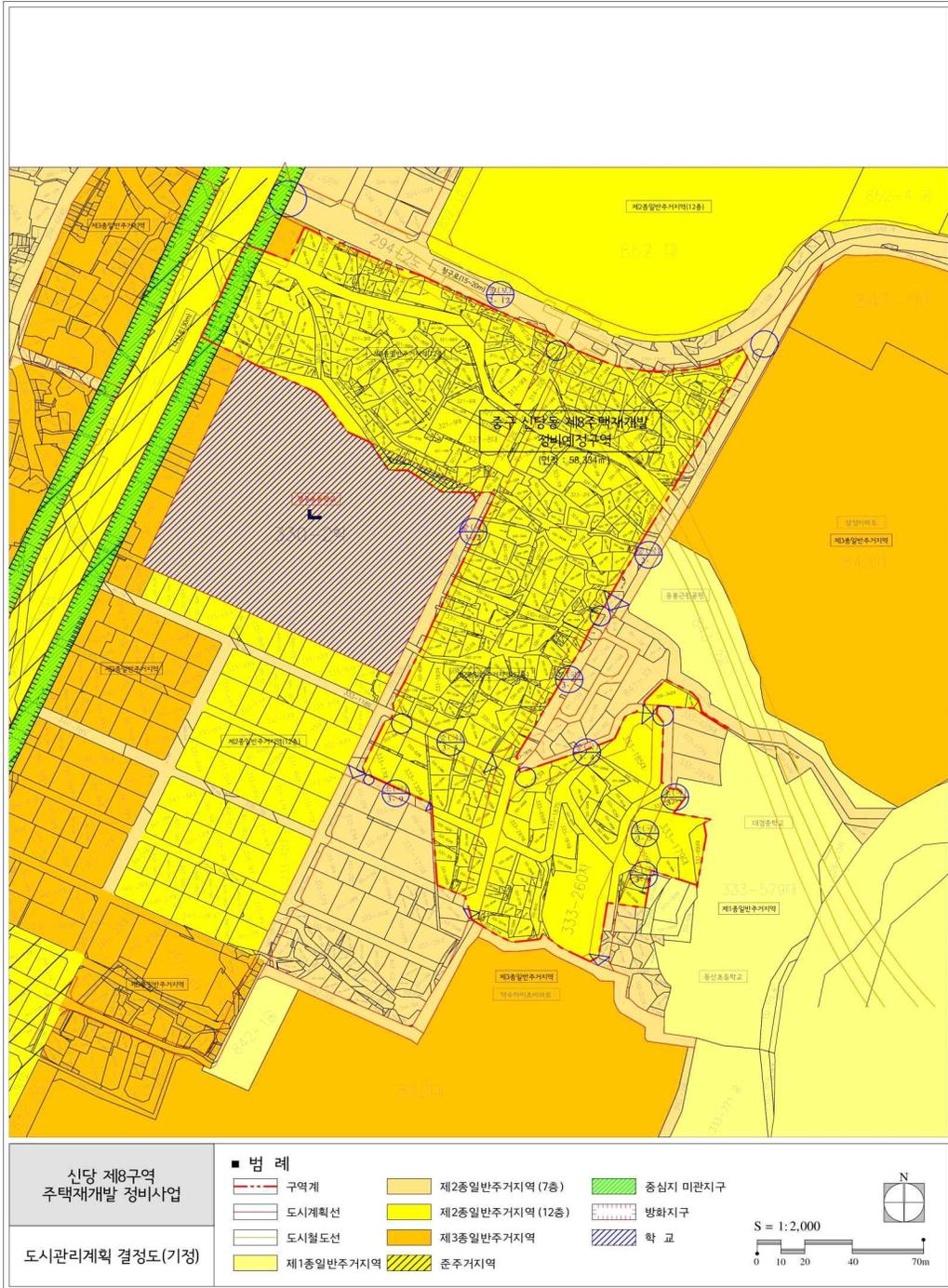
- 관계도면은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주택과(☎02-3396-572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건축 배치계획도(기정)



### 건축 배치계획도(변경)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2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목 적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 업 명 : 중림로 및 청파로 일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 3. 위치 및 규모

○ 중림로 및 청파로 일대 구간 점포 180개점포

(일 구간 합동시장~서부교차로~덕수의원, 서부교차로~삼성사이버상가, 소월로 10 일부)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5. 사업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까지

6.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 7. 소요예산 : 금450,000천원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 8. 추진내용

○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 주민

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불법간판 신고 등)

9.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b>총 수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li> <li>※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li> <li>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li> <li>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li> </ul>
<b>벽면형 간 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li> <li>○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li> <li>○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li> <li>▶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li> </ul> </li> </ul>
<b>창문이용 광고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쪽 폭 30cm이하</li> <li>○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건물 2층 이하 자사광고에 한정,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li> <li>○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li> <li>○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li> </ul>
<b>기 타 준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li> <li>○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li> <li>○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li> <li>○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li> </ul>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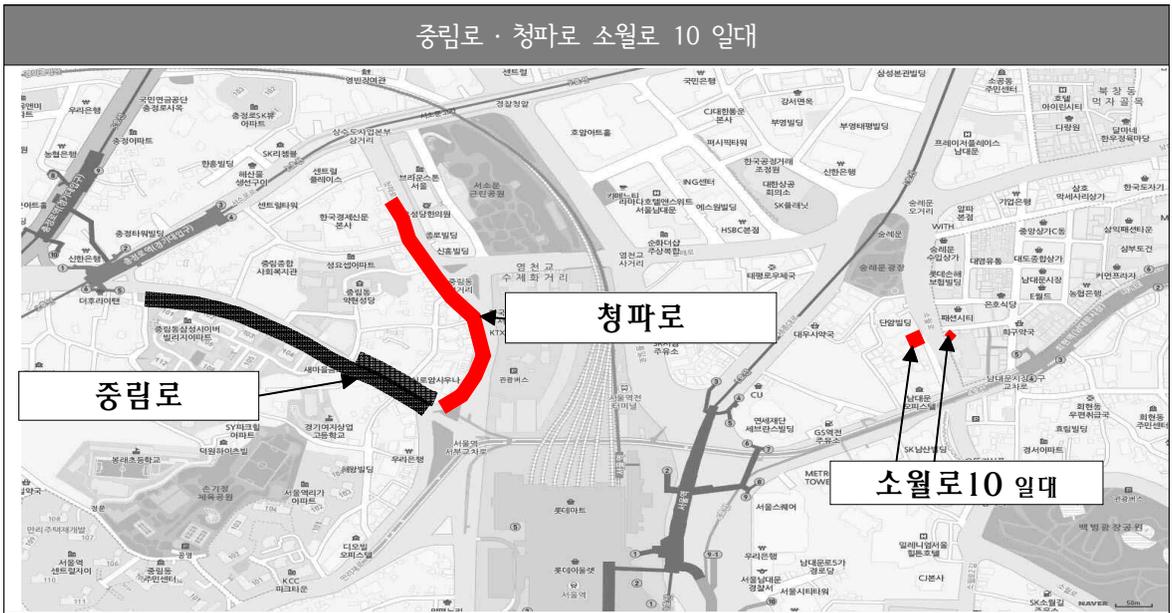
10.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1.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2.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3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목 적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 업 명 : 청구로 패션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 3. 위치 및 규모

- 청구로 패션문화거리 구간(광희문~청구역) 점포 110개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5. 사업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까지

6.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7. 소요예산 : 275,000천원(구비)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 8. 추진내용

-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 주민

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불법간판 신고 등)

9.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li> <li>※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li> <li>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li> <li>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li> </ul>
벽면형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li> <li>○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li> <li>○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li> <li>▶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li> </ul> </li> </ul>
창문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쪽 폭 30cm이하</li> <li>○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건물 2층 이하 자사광고에 한정,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li> <li>○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li> <li>○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li> </ul>
기 타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li> <li>○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li> <li>○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li> <li>○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li> </ul>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10.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1.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2.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3-2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5길 43	2018.05.30.	만리재로3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만리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길 30	2018.05.30.	세종대로1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1-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14	2018.05.30.	동호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한강변의 옛 지명인 동호 지명을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4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122-6	2018.05.30.	동호로1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565, 1566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19-3	2018.05.30.	난계로1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5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35	2018.05.30.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내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2. 지정취지 : 아파트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지 정 일 : 2018년 5월 30일 [제2018-001호]
4. 단속개시 : 2018년 7월 1일 부터
5. 계도기간 : 2018년 5월 30일 ~ 2018년 6월 30일
6.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7. 과 태 료 : 5만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위생과(☎3396-5671,5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38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공공조형물 설치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방지

※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 조형시설물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 환경시설물 : 벽화·분수대·야외무대·폭포 등

- 상징조형물 : 상징탑·기념탑·동상 등

○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및 비용부담(제4조~제5조)

- 설치주체의 설치 사전신청 의무화(신청서 및 계획서 지참)

- 중구에 기부채납 및 설치주체의 비용부담 조건 명시

○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및 심의위원회 운영(제6조~제7조)

-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공익성, 적합성, 안전성 등) 제시
- 공공조형물 심의에 대한 도시디자인위원회 대행 근거 마련
-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처리 (제8조~제11조)
  - 설치 신청에 대한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 처리 절차 제시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제12조~제13조)
  - 연 1회 이상 상태점검 및 총괄부서에 통보 의무화로 책임 강화
  - 공공조형물 홍보 및 활용 근거 마련으로 명품 중구 이미지 구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 전화: 3396-5963, FAX: 3396-8817, E-mail: superb@

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나. 벽화·분수대·야외무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중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 및 부지 면적의 적합성
4.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조형물에 한정하며,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국민 공감도
- 4. 출생지·활동지역·묘소 및 동명·가로명 등 관련성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 2.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30일 이내의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 계획서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질 :

4. 작품설명

5. 제작자

6. 사업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		주관부서	
설치목적			
인물 또는 사실 소개			

<b>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b>
<b>공공조형물의 설치 사진</b>

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			
점검일시	점검 내용		
	전 후 사 진	전	후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보수일시	보수 내용		
	전 후 사 진	전	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408호

###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시설 현황

- 시설명칭 : 중구 여성플라자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5 (신당동 292-60외 1)
- 규모 : 지상3층 ~ 지상6층(대지 608㎡, 건물연면적 2,178㎡ 중 1,014㎡)
- 위탁시설 : 여성플라자 지상3층 ~ 지상6층  
(※ 지하1층 ~ 지상2층과 지상3층의 일부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

2. 위탁내용 :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 4. 위탁조건

- 관장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 시설운영 중구 여성플라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중구 여성플라자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5. 신청자격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성의 복지, 직업 및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할 것

**관장 내정자 자격기준**

▶ 중구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다만,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6. 신청 제외 대상 (결격사유)**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05. 29. (화) ~ 2018. 06. 11. (월)
- 접수기간 : 2018. 06. 07. (목) ~ 2018. 06. 11. (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본관 1층)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목~월, 09:00~18:00)  
(※토요일 · 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8. 제출서류 : 원본 포함 17부**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li> </ul>	○	○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 신청서</li> <li>■ 대표자의 경력사항</li> <li>■ 중구 여성플라자 관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중구 여성플라자 관장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li> <li>■ 법인·단체 등의 여성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li> <li>■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li> <li>■ 향후 3년간 중구 여성플라자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li> <li>■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li> <li>-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li> <li>-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li> </ul> </li> <li>■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li> </ul>		

- 신청서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7부 (원본 1부, 사본 16부), 요약서 (17부, 3~5페이지 분량)
  - ※ 쪽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9. 수탁법인(단체)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다도 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
- 신청법인(단체)은 심사당일(별도통보)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결과발표 :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관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7분 내외 운영계획 발표 및 관장의 전문성 등 종합평가 면접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 (☎3396-5403)로 문의